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2018년 10월 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30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9. 30.(일)	담당부서	에너지수요관리과
담당과장	이경훈 과장(043-203-5380)	담 당 자	양율승 사무관(044-203-5382)

전동기 최저효율기준을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의 최저효율 기준을 전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한다.

○ 올해 10월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기준에 미달되면 제조,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용량대별 최저효율 적용시기>

구분		0.75~15kW	15~37kW	37~200kW	200~375kW
최저 소비 효율 기준	IE2급	'10.7월~18.9월 **효율 : 87.5%**	'10.1월~18.9월 **효율 : 93%**	'08.7월~15.9월 **효율 : 95%**	해당없음
	IE3급	18.10월부터 **효율 : 89.5%**	18.10월부터 **효율 : 94.1%**	15.10월부터 **효율 : 95.8%**	16.10월부터 **효율 : 96.2%**

□ 전동기는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하며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되고 있어, 전동기 효율은 산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직결된다.

* 국내 전동기의 전력 소비량 비중을 54%로 추정(18년, 전기연구원 분석)

□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 관리를 강화한다.

○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는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통관전에 신고토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아울러, 올해 6월부터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한국에너지공단내 개설하였고 제조·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여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18년 1차 점검결과(8.20~9.7) : 80개 제조·수입 및 유통업체를 점검하여 13건을 적발하였고 향후 이들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

□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사업을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

try of Trade,
try and Energy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양율승 사무관(☎ 044-203-5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10-01 09:32:39

참고 1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1) 개요

○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 라벨(1~5등급, CO_2 배출량, 에너지비용)을 부착

- 또한 제조업체에게는 생산단계에서 부터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

*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말하며 위반시 생산판매금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대상제품 제조·수입업체의 의무적(Mandatory) 신고 제도

2) 도입 및 법적근거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92년도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를 시작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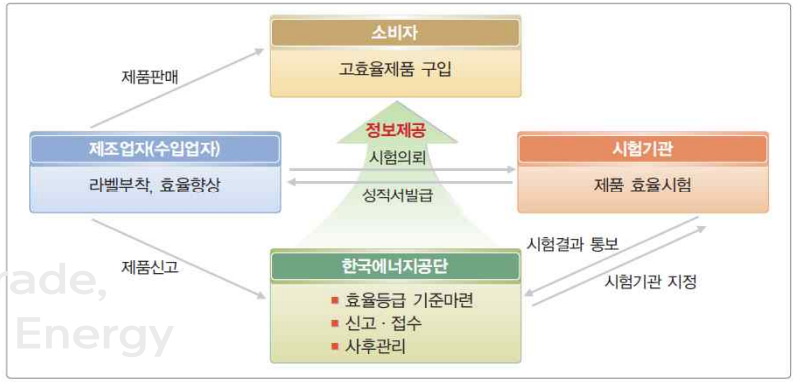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9호, '18.5.23)

3) 대상 : 29개 품목('18년 기준)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 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4) 추진 절차



try of Trade,
try and Energy

5) 해외사례

○ 미국 :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가이드 라벨제도
○ 유럽 :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라벨제도
○ 일본 : Top Runner 프로그램 및 통일에너지절약라벨제도
○ 중국 :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도

6) 추진현황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잠정)	'18년
대상품목수	21	22	30	35	35	35	28	27	27	29
신고업체수	850	935	937	1,295	1,779	2,339	2,223	2,411	2,738	-
제품수(모델)	20,011	23,941	26,275	28,830	28,022	34,061	39,820	46,707	52,148	-
판매대수(천대)	154,189	163,898	217,888	186,723	170,228	166,594	126,384	157,258	-	-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10-01 09:32:39

참고 2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

□ 목 적

○ 프리미엄 기준 전면 시행('18.10월)에 따라, 제도 초기 업계의 기준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업계 애로·건의사항 및 불량 전동기 상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운영방법

○ 운영주체 및 내용

- (공단 효율기술실) 애로 및 건의사항 분석 후 제도 반영, 불량제품 신고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추진,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전기산업진흥회) 전동기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불량제품(기준 미달, 미신고 등)의 신고 접수, 사후관리(현장확인) 지

○ 운영기간 : '18년 6월부터 계속

□ 운영체계

○ 전동기 업계와의 소통창구를 진흥회로 일원화하여, 공단은 정책수립·운영 역할, 진흥회는 제도안내·홍보·사후관리지원 역할 수행

